

**Cour
Pénale
Internationale**

**International
Criminal
Court**



원본: 영어

No.: **ICC-02/05-01/09**

날짜: 2009 년 3 월 4 일

제 1 예심원

담당: 판사 아쿠아 퀴니히아, 부장판사
판사 아니타 우사체카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수단 다르푸르 사태

검찰 대(對)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(오마르 알 바시르) 건(件)

공개문건

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

재판소 규정 31 조에 의거, 문건은 다음 당사자들에게 통보됨

검사실	변호인단
-----	------

루이스 모레노 오캄포, 검찰총장 에사 파알, 수석검사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단	
---------------	--

	신청인 측 법정 대리인단
--	---------------

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피해자	
------------------	--

	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조정 및 보상 신청인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	
------------------	--

	피고 측 국선 변호인 사무실
--	-----------------

국가 측 대리인	
----------	--

	법정 조언자
--	--------

사무처

사무총장 실바나 알비아	
-----------------	--

	변호 지원부
--	--------

피해자 및 증인단	
-----------	--

	구치부
--	-----

피해자 조정 및 보상부	
--------------	--

	기타
--	----

국제형사재판소(이후 “재판소”)의 제 1 예심원(이후 “예심원”)은;

수단 다르푸르 사태(이후 “다르푸르 사태”) 기록 내에서 집단학살,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(이후 “오마르 알 바시르”)에 대해 2008년 7월 14일 검찰 측이 신청한 “Prosecution’s Application under Article 58” (“the Prosecution Application”)을 검토하였고¹;

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타 정보를 검토하였고²;

로마법전(이후 “법전”) 25 조 3 항 (a)에 의거,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오마르 알 바시르의 간접 가해자 혹은 간접 종범³으로서의 혐의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법전 58 조 1 항 (b)에 의거, 해당인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, “Decision on the Prosecution’s Request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”⁴가 타당한 것으로 인지하였고;

이에 법전 19 조 와 58 조를 참조하여;

법전 19 조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모든 후속 판결과는 별개로, 검찰 측이 영장 청구와 함께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재판소에 있음을 고려하였으며;

¹ ICC-02/05-151-US-Exp ; ICC-02/05-151-US-Exp-Anxs1-89 ; 개정판 ICC-02/05-151-US-Exp-Corr 과 개정판 ICC-02/05-151-US-Exp-Corr-Anxs1 & 2 ; 와 공공 편집판 ICC-02/05-157 과 ICC-02/05-157-AnxA.

² ICC-02/05-161 과 ICC-02/05-161-Conf-AnxsA-J ; ICC-02/05-179 와 ICC-02/05-179-Conf-Exp-Anxs1-5 ; ICC-02/05-183-US-Exp 와 ICC-02/05-183-Conf-Exp-AnxsA-E.

³ 아니라 우사체카 판사의 “Decision on the Prosecution’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”에 대한 부분 반대의견 파트 ◎ 참조.

⁴ ICC-02/05-01/09-1.

현 단계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재판 권한을 결정하는 법전 19조 1 항에 의거, 검찰 측이 영장 청구와 함께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소의 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명한 이유와 자기 증거요소가 없음을 고려하고;

법전 8조 2 항 (f)의 해석에 따라,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닌 수단 정부군(이하 “GoS”)과 수단 해방운동/군(이하 “SLM/A”) 및 정의와 평등운동(이하 “JEM”)으로 대표되는 수개의 군사집단 간의 충돌이 수단 전역에서 2003년 3월부터 최소한 2008년 7월 14일까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(i) 2003년 4월 엘 파셔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 GoS는 다르푸르 내 SLM/A 와 JEM 및 기타 무장 반군 단체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잔자위드 민병대에 대규모 이동 명령을 하달하였으며, 이후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, 수단 경찰, 국가 정보국(이후 “NISS”) 및 인도적 지원위원회(이하 “HAC”)를 포함한 GoS 가 다르푸르 전역에서 상기 무장 반군 단체에 대한 대(對) 게릴라 전을 수행하였고; (ii) 이러한 대(對) 게릴라 전이 2008년 7월 14일 검찰 측의 체포영장 청구일까지 계속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(i) GoS의 대 게릴라 전 수행 도중, SLM/A 와 JEM 및 기타 무장 반군과 GoS 간의 무력 충돌에서 반 정부 세력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 다르푸르 지역의 비무장 시민들, 주로 푸르, 마사리트 및 자그하와 부족,⁵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GoS 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과; (ii) GoS 가 대 게릴라 전에서 공격 대상이 된 촌락과 마을을 장악한 후 체계적인 약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⁶;

⁵ 아나타 우사체카 판사의 “Decision on the Prosecution’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”에 대한 부분 반대의견 파트 ◎ B. 참조.

⁶ 주요공격으로 (◎) 2003년 8월 15일 경 코둠 지역에 대한 1차 공격 ; (◎) 2003년 8월 31일 경 코둠 지역에 대한 2차 공격 ; (◎) 2003년 8월 15일 경 빈디시 공격 ; (◎) 2003년 8월과 9월 사이에 행해진 무크자르 공습 ; (◎) 2003년 12월 10일 경 아라와라 공격 ; (◎) 2004년 2월 사타야 마을 및 카이렉을 포함한 인접 촌락 공격 ; (◎) 2007년 10월 8일 경 무하제리아 공격 ; (◎) 2008년 1월 7일과 12일, 24일에 행해진 사라프 지다드 공격 ; (◎) 2008년 2월 8일 시레아 공격 ; (◎) 2008년 2월 8일 시르바 공격 ; (xi) 2008년 2월 8일 아부 수루즈 공격 ; (xii) 2008년 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자벨 문 공격 포함.

이에 법전 8 조 2 항 (e)(i)와 8 조 2 항 (e)(v)에 의거, 2003년 4월 엘파서 공항 공격 이후 2008년 7월 14일까지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, 수단 경찰 및 NISS, HAC를 포함한 GoS가 상기 대 게릴라 전을 수행함에 있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나아가, 다르푸르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무력 충돌에서 GoS에 대항하는 SLM/A 와 JEM 및 기타 무장 반군 세력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르푸르 지역 내 비무장 시민들, 주로 푸르, 마사리트, 지그하와 부족,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GoS의 방침이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상기 다르푸르 지역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(i) 광범위하여 최소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다르푸르 지역이 피해지역에 포함되었고; (ii) 그 폭력행위가 조직적이고 상당한 범위에 이르며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GoS가 상기 다르푸르 지역 비무장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 공격에서 다르푸르 전 지역에 걸쳐 수 천 명의 비 무장시민들,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, 지그하와 부족,에 대한 살인과 인종청소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⁷;

GoS가 상기 다르푸르 지역 비무장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 공격에서 (i) 주로 푸르와 마사리트, 자그하와 부족민으로 이루어진 수십만 명의 시민들에 대한

⁷ 주요지역으로 (◎) 코둠, 빈디시, 무크자르, 아라와라 시(市) 및 서(西) 다르푸르의 와디 사리, 무크자르, 가르시라-데레이그지역 인접 촌락. 2003년 8월에서 12월까지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샤따야, 카이렉 마을. 2004년 2월과 3월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부람 지역 내 자그하와, 마사리트, 미세리야 자벨 마을과 촌락을 중심으로 89에서 92건. 2005년 11월에서 2006년 9월까지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야신 지역 내 무하제리야 마을. 2007년 10월 8일 경 ; (◎) 서(西) 다르푸르의 쿨버스 지역 내 시레아 마을과 사라프 지다드, 아부 수루즈, 시르바, 자벨 문 마을.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 ; (◎) 쉬게그 카로 및 알-아인 지역. 2008년 5월

강제 이주가 행해졌고;⁸ (ii) 수 천 명의 동 집단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자행되었으며;⁹ (iii) 동 집단 시민들에 대한 고문이 있었다¹⁰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따라서 법전 7조 1항 (a), (b), (d), (f) 및 (g)에 의거, 2003년 4월 엘 파셔 공항 공격 직후로부터 2008년 7월 14일에 이르기까지 다르푸르 전 지역에서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, 수단 경찰, NISS 및 HAC를 포함한 GoS에 의해 살인, 인종청소, 강제 이주, 고문 및 강간 등의 반인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오마르 알 바시르가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합법적이며 사실상의 수단 대통령 겸 군 참모총장이었다는 점과 그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수단 고위 관료 및 군부 지도자들과 함께 상기 언급한 GoS의 대 게릴라 전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고려하고;

나아가 예심원은 대안으로 (i) 오마르 알 바시르의 역할이 전반적인 작전의 계획과 실행에 협조하는 단계를 넘어서; (ii) 그가 수단 육군과 동맹군인 잔자위드 민병대, 수단 경찰, NISS 및 HAC 등 수단 국가 조직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고; (iii) 이를 통해 해당 작전의 실행을 확실히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찾아 이를 고려하고;

⁸ 주요지역으로 (◎) 코둠, 빈디시, 무크자르, 아라와라 시(市) 및 서(西) 다르푸르의 와디 사리, 무크자르, 가르시라-데레이그지역 인접 촌락. 2003년 8월에서 12월까지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샤따야, 카이렉 마을. 2004년 2월과 3월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부람 지역 내 자그하와, 마사리트, 미세리야 자벨 마을과 촌락을 중심으로 89에서 92건. 2005년 11월에서 2006년 9월까지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야신 지역 내 무하제리야 마을. 2007년 10월 8일 경 ; (◎) 서(西) 다르푸르의 쿨버스 지역 내 시레아 마을과 사라프 지다드, 아부수루즈, 시르바, 자벨 문 마을.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

⁹ 주요지역으로 (◎) 서(西) 다르푸르의 빈디시, 아라와라 시(市). 2003년 8월에서 12월까지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카이렉 마을. 2004년 2월과 3월 ; (◎) 서(西) 다르푸르의 쿨버스 지역 내 시레아 마을과 시르바 마을.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

¹⁰ 주요지역으로 (◎) 서(西) 다르푸르의 무크자르 마을. 2003년 8월 ; (◎) 남(南) 다르푸르의 카이렉 마을. 2004년 3월 ; (◎) 서(西) 다르푸르의 쿨버스 지역 내 자벨 문 마을. 2008년 2월

상기 이유들과 함께 법전 25 조 3 항 (a)를 근거로 한 오마르 알 바시르의 아래 범죄행위에 대한 간접 가해자 또는 간접 종범¹¹ 혐의가 상당 수준 인정됨을 고려하여;

- i . 비무장 시민이나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법전 8 조 2 항 (e) (i)의 해석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;
- ii . 약탈은 법전 8 조 2 항 (e) (v)의 해석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;
- iii . 살인은 법전 7 조 1 항 (a)의 해석에 따라 반인륜 범죄에 해당;
- iv . 인종청소는 법전 7 조 1 항 (b)의 해석에 따라 반인륜 범죄에 해당;
- v . 강제이주는 법전 7 조 1 항 (d)의 해석에 따라 반인륜 범죄에 해당;
- vi . 고문은 법전 7 조 1 항 (f)의 해석에 따라 반인륜 범죄에 해당;
- vii . 강간은 법전 7 조 1 항 (g)의 해석에 따라 반인륜 범죄에 해당;

법전 58 조 1 항에 의거, 현 단계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의 체포가 (i) 그의 재판소 출두를 위해서; (ii) 법전에 의거, 그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진행이 위협받거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; (iii) 상기 범죄를 반복해서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;

상기 이유를 근거로,

다음과 같이 영장을 발부한다:

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: 남성, 수단 국적, 1944년 1월 1일 수단 웬디 행정구 호쉬 바나가 출생, 북부 수단의 자아리 부족원, 1993년 10월 16일 RCC-NS 의 지명으로 수단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, 1996년 4월 1일 이후 연속으로 대통령으로

¹¹ 아나타 우사체카 판사의 “Decision on the Prosecution’s Application for a Warrant of Arrest against Omar Hassan Ahmad Al Bashir”에 대한 부분 반대의견 파트 ◎ 참조.

선출, 오마르 알-바시르, 오메르 하산 아메드 엘 바시레, 오마르 알-바시르, 오마르 알-베시르, 오마르 엘-바시르, 오메르 알바시어, 오마르 엘바시르, 오마르 하산 엘-베시르 등으로 표기].

영어, 아랍어, 불어로 작성되었으며 영문판이 공식문건.

/서명/

판사 아쿠아 쿠니히아
부장판사

/서명/

/서명/

판사 아니타 우사체카

판사 실비아 스타이너

2009년 3월 4일 수요일

네덜란드 해이그